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

-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2. 4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세 무 과]

-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-

제 안 설명 서

설명자: 세무과장

『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,
 - “코로나19”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착한임대인(임대료 인하 건물주), 개인사업자 및 법인, 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자
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대구시 “코로나19 관련 피해 세제 지원 계획”에 따라 재산세,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- 다음은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이번 피해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으로는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관내 개인사업자 및 중소 법인,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인 계명대 동산병원을 비롯한 6개 병원이 되겠습니다.
 - 감면 세목 및 감면율은,
먼저 2022년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%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액에서 감면하고,

다음으로 관내 개인사업자 및 중소 법인에 대해 2022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(구 주민세 균등분) 세액의 50%를 감면 토록 하였으며,

끝으로 코로나19 지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사업소분(구 주민세 재산분) 납부를 면제 하고, 과세기준일(6. 1.) 현재 의료업에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 25%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.

□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액 규모는

○ 이번 감면 동의안을 통해 지원되는 구세 감면 규모는 총 16억5천 만원으로 추계되며,

감면 지원으로 감소되는 세입 중 착한 임대인 및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액 9억원은 대구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하게 되어, 실제 우리구 지방세입의 감소는 7억5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○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및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,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

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

의안번호	00822640
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4. / .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(세무과장)

1. 제안 이유

- 수년째 지속된 “코로나19”의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착한임대인(임대료 인하 건물주), 개인사업자와 법인,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.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대구시의 “2022년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”에 의하여 재산세,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*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근거

§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.
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,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,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2. 주요 감면 내용

가. 감면 대상

- ① **(임대료 인하 건물주)**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(“착한 임대인”)
- ② **(개인사업자 및 법인)** 일정 기준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자본(출자)금액 30억원 이하 법인
- ③ **(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)**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 병원,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

■ 감염병 전담 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: 2022.2월 현재 6개소

- 대구보훈병원(감염병 전담 병원), 계명대 동산병원, 구미병원, 삼일병원, W병원, 세강병원

나. 감면 세목 및 감면율 (2022년도에 한함)

- ① **(임대료 인하 건물주)**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보전

- 재산세 건축물분 (임대료 인하액의 10% 재산세 감면 감면액은 1백만원 한도)
 - 2022년 상반기(1~6월) 중에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(“착한 임대인”)가 해당 건축물을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액의 10%를 감면하며,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(1구 내의 건축물 기준)을 초과할 수 없다.
 - 재산세는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.

※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적용

▶ **(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)**

-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등을 위하여 2022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*의 10% 감면 (1백만원 한도)
* 2022년 상반기(1월~6월) 중 임대료 인하액

* 인하 기준 임대료 : 2019년 월평균임대료 (단, 2020년 최초임대인 경우 2020년 월평균 임대료 기준, 2021년 최초임대인 경우 2021년 월평균 임대료 기준)

(신청방법) 2022.6.1.~ 7.31.까지 증빙서류 첨부 신청 (전후 신청도 가능)

증빙서류 : 임대료변경 전·후 임대차계약서, 금융거래 내역 등 입증서류

- 재산세는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

② (개인사업자 및 법인) 우리구 자체 재원 부담

-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(주민세 50% 감면 5만원 → 2.5만원)

- 2022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(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해당)의 주민세 사업소분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율의 50% 감면

- 주민세 사업소분의 법인 등 (주민세 50% 감면 5만원 → 2.5만원)

- 2022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1호나목1)과 같은 목4)에 해당하는 세율의 50% 감면

③ (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)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보전

-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 (의료업 부동산 25% 감면, 선별진료소는 면제)

- 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하되, 선별진료소(임시건축물)는 전액 면제한다.

- 재산세는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.

- 주민세 사업소분 (납부 면제, 세율: 330㎡초과 사업소 연면적 × 250원)

- 주민세 사업소분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율의 납부 면제

- 주민세 종업원분 (6개월분 납부 면제, 세율: 월급여 총액 × 0.5%)

- 2022년도 1월분 ~ 6월분(귀속월 기준)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면제

* 지원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적용

▶ (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)

-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
- 재산세는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
 - * 선별진료소 임시간축물에 대하여 재산세(구세)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(시세) 면제

다. 2022년 감면 예상액 (2021 감면액으로 추계)

- 2022년 우리구 지방세(구세) 감면 지원 예상액 : 16.5억여원 규모

감면 대상	감면내용 및 감면율	감면 세액 (예상액)
① 착한 임대인 감면 (市 특별교부금 보전)	· 착한임대료 동참 건물주 재산세(건축물) 감면 (임대료 인하액의 10%)	0.5억원 (300명 정도)
② 지원의료기관 감면 (市 특별교부금 보전)	· 의료기관 재산세(건축물, 토지) 감면 (25%) · 의료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등 감면 (6개월 면제) * 지원의료기관 : 대구보훈병원 등 6개소	8.5억원 (6개 병원)
③ 소상공인 (개인사업자, 법인) 등 감면	· 개인사업자,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 50% 감면 * 주민세 5만원 → 2만5천원 (50%↓)	7.5억원 (30,000개소)

☞ ①항목, ② 항목 : 市 특별교부금으로 보전, ③항목 : 우리구 부담 (세입 7.5억원 감소)

라. 기타 사항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2년도 과세분에 한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「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」 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되, 허위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.

3. 참고 사항

○ 관계법령
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
- 지방세법 제80조, 제81조, 제84조의2, 제84조의3 등

○ 예산 사항 : 7.5억원 정도 구세 감소

참 고 1 관 계 법령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 -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(2021.6.8. 개정)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, 긴급한 재난 관리 필요성,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

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
-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"란 지진, 풍수해, 벼 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- ⑦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

□ 지방세법

제80조(과세표준)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.

제81조(세율)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기본세율

가.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: 5만원

나.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

1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: 5만원

2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: 10만원

3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: 20만원

4) 그 밖의 법인: 5만원

2. 연면적에 대한 세율: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. 다만, 폐수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.

제84조의2(과세표준)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으로 한다.

제84조의3(세율)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